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사항 포함〉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001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사항 포함	2

I .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19.
3. 회부연월일 : 2024. 7. 22.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사항 포함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여성</u> 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7. <u>청년·여성</u> -----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기 위하여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되었음¹⁾.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립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1) 「청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기본법」 제4조²⁾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³⁾ 및 제9조⁴⁾에서는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3)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 제2조제2항제3호5)에서는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은 청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청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의 범위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청년기본법」 제3조6)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개정안에서

5)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6)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청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별법에 따른 “청년”의 범위 >

법 률	“청년”에 대한 범위
「청년기본법」	·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7)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청년기본법」 제19조⁸⁾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청년의 능력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도 개정안과 같이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 청년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임.

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정부에게 청년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입법례로 청년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⁹⁾를 들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93

9)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여성·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청년 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한 일반법인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의 범위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